

[별표 2]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1.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를 유지·계승할 것
 - 나.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4. 민원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방문도 하지 아니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6. 현상변경 불허, 발굴 불허 통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7.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지역 및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8.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